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양민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6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1월 21일
발 의 자 : 양민규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기대, 김재형, 김정태,
김제리, 김태수, 김희걸,
박기열, 박상구, 박순규,
송명화, 이광호, 이병도,
이영실, 장상기, 전석기,
최 선, 홍성룡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조례상 '다문화교육'에 대한 정의가 없어 조례의 명확성 및 신뢰 확보가 떨어짐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자 하며,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및 유능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다문화교육'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제2조제1호 및 제2호)
- 나.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신설함(제5조제2항~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, 다문화가족지원법, 지방자치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1. “다문화교육”이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.
2. “다문화학생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「유아교육법」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.

가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

나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

다.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

제5조제1항 중 “자문을”을 “자문에 응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사항”을 “세부사항”으로 한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문화분야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

서 교육감이 위촉하고,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<u>이 조례에서 “다문화학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「유아교육법」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.</u></p> <p>1. 「<u>다문화가족지원법</u>」 제2조에 <u>해당하는 사람</u></p> <p>2. 「<u>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</u>」 제2조에 <u>해당하는 사람</u></p>	<p>제2조(정의) <u>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“<u>다문화교육</u>”이란 여러 나라의 <u>다양한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</u>을 말한다.</p> <p>2. “<u>다문화학생</u>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「<u>유아교육법</u>」과 「<u>초·중등교육법</u>」상의 <u>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</u>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<u>다문화가족지원법</u>」 제2조에 <u>해당하는 사람</u></p> <p>나. 「<u>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</u>」 제2조에 <u>해당하는 사람</u></p>

3.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

제5조(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둘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다.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

<삭 제>

제5조(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-----

----- 자문에 응하기 -----

-----.

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문화분야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,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-----
- 세부사항-----.